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 일　시 : 2015년 10월 21일(수) 오후5시

○ 장　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

○ 주　최 : 양승조 국회의원・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 지　원 : 아름다운재단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2005년부터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단체가 함께 살고싶은 복지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안'에 대해 의결하고 전국 5,981개 자체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정부사업과 유사·중복이라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시 사업 7건, 충청남도 3건, 도·시 매칭 25건 등 총 35건이 유사·중복으로 분류되어 정비대상이 됨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35건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손가정 수당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토요운영지원 등은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이번 정비방안은 지방자치제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국회, 천안시, 천안시의회, 당사자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공유하고,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회보장사업이 지속되어 소외된 이웃과 주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참여 바랍니다.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015년 10월 21일(수) 오후5시 ~ 6시30분
□ 장 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불당동 429-3번지)
□ 주 최 : 양승조 국회의원·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 대 상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기관·단체 실무자, 당사자, 국회의원, 천안시의원, 천안시공무원 등
□ 내 용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 인사말. 양승조 국회의원
- 당사자 발언 1. 아동(지역아동센터 실무자)
2. 장애인(중증장애인 당사자)
3. 노인(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 저소득 계층(북한이탈주민)
5. 여성·성폭력(충남성폭력상담소 실무자)
- 주제발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문제점 및 비판점(김남희 팀장_참여연대)
- 토론 1.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추진현황(양승조 국회의원_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의 문제점 및 충청남도 현황(김연 도의원_충남도의회)
3. 정비방안 관련 천안시 예산편성 방향(최종재 과장_천안시 복지정책과)
4. 정비방안 관련 천안시 예산편성 방향(김순남 과장_천안시 여성가족과)
5. 정비방안 관련 천안시 예산편성 방향(박미숙 과장_천안시 노인장애인과)
- 종합토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대응방안 모색

목차

인사말

양승조 국회의원 ---------- 1

당사자 발언

조성목 회장(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 5

심혜경 씨(중증장애인) ---------- 9

김종모 주임(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 ---------- 14

이선화 씨 (북한이탈주민) ---------- 17

오윤경 상담원(충남성폭력상담소) ---------- 18

주제발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문제점 및 비판점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 21

토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추진현황
양승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의 문제점 및 충청남도 현황
김연 도의원(충청남도의회) ---------- 58

정비방안 관련 천안시 예산편성 방향
김순남 과장(천안시 여성가족과) ---------- 63

정비방안 관련 천안시 예산편성 방향
박미숙 과장(천안시 노인장애인과) ---------- 64

[별첨자료 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업보장사업 정비
(천안시 복지정책과) ---------- 67

[별첨자료 2] 지자체 정비사업(충청남도, 천안시) ---------- 69

[별첨자료 3] 지방자체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 72

[별첨자료 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안 ---------- 8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인사말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파기도 모자라 있는 복지정책도 폐지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천안 갑 국회의원 양승조입니다.

오늘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단체가 연합하여 활동하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정비'라는 미명하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행 20년을 넘긴 지방자체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폐지하도록 강요하며 예산삭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박탈 압박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폐지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은 1조원(9,997억원)에 이르고, 제도 중단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자가 645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월 소득 30만원도 안 되는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보육교사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보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연금 추가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수당, 조손가정 지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등 이번 정비사업 대상이 1,496개에 달합니다.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천안시는 시 사업 7건, 충청남도 3건, 도·시 매칭 25건 등 총 35건이 유사·중복으로 분류되어 정비대상이 됨에 따라 폐기될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기불황의 영향을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이들은 더 이상의 복지박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명분을 내건 복지사업 폐지, 보지박탈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기업 재벌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복지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쥐꼬리만 한 혜택마저 빼앗기게 된 지역주민 여러분과 또한 그나마 작은 인건비 지원마저 박탈당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국회의원 양승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당사자 발언

당사자 발언 1. 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지원금 축소가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분석

조성목 회장(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회보장사업 유사, 중복 지원 정비 요구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지목되는 지자체 지원금 중 폐기 내지는 축소대상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은 냉난방비 지원, 토요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하계수련비 지원, 컨설팅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안전점검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 자체가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으로, 지역아동센터종사자 급여가 사회복지관련단체의 평균임금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는 수준으로 지급해야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법적 지원금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최소한의 보호에 그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하여 돌봄 서비스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의 의견대로 지자체의 지원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폐지 내지는 축소대상인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지원금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냉난방비 지원금을 살펴보자면, 센터의 운영비로는 냉난방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절기 냉방기를 가동하는 전기요금이나, 동절기 난방기를 가동하는 비용을 센터 운영비로 지급한다면, 그 비용만으로도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학교는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방학을 하지만, 센터는 학교가 방학을 하는 동절기 하절기에도 문을 열고 아동들을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방학 중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하거나 활동을 할 여건이 전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자체의 냉난방비 지원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구조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토요운영비를 살펴보자면, 놀토가 확산되면서 토요일에도 아동들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식사 등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학교에서 체험학습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에서 센터에서 이를 수용하여 주지 못한다면, 취약계층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그 밖의 지원단체에서 토요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제한된 자원으로 소수의 센터에 지원되는 부정기적인 지원이며, 더욱이 이런 관련단체의 지원을 근거로 지자체 지원을 폐지한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을 민간에게 강제로 이양하는 아주 심각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3. 교재・교구비 지원을 살펴보자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학습 능력은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집니다. 보호자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학습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기초 학습지도를 위한 교구교재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구교재비 항목이 없어질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학습 능력은 계속 저하되며 이는 곧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정 지원금에는 이러한 교재 및 교구를 구입하는데 할애할 만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최소한의 프로그램 수행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아동들의 학습지도와 재능개발에 소요되는 교재・교구는 거의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 지원금이 폐지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도능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아동들의 학력 또한 저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고가의 컴퓨터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폐기하는 컴퓨터를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4. 하계수련비 지원은 충남도와 시군이 분담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2015년 현재 아동 1인당 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수련회를 다녀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센터들은 이 금액에 1년 동안 모은 자체자금 등을 모아서 1년에 한번 1박2일 캠프를 다녀옵니다.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가면 방학동안 집에만 있었던 아이들이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방학기간 동안 캠프에 대해 자랑도 하고 일반 아동들과 함께 동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서 가는 이 하계수련회가 유일한 피서인 경우도 태반입니다. 따라서 이 아동들에게는 하계수련회가 집과 학교를 벗어나는 거의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 지원금이 폐지된다면 이 아동들에게는 이런 최소한의 기회도 박탈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5. 컨설팅비 지원은 신규 지역아동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거점형 센터를 만들어 신규 진입하는 센터에 서류, 경리, 회계, 운영노하우, 후원 등 지역아동센터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 위임하는 형태인데 이 비용이 삭감된다면 신규로 진입하는 시설에게 컨설팅을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비용만 줄이고 이러한 서비스가 폐지된다면, 초기 진입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은 눈에 보이며 이는 신규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아동을 돌보기보다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6.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지역아동센터는 성장기의 아동들이 왕성한 활동력으로 뛰어 노는 공간으로 각종 시설이 빨리 노후화되며, 또한 대부분의 센터 건물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들에게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만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고 좀 더 쾌적한 돌봄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노후되는 시설을 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지원금에는 이런 환경-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온전히 센터장이 개인부담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는 급여를 받는 센터장들이 이를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더욱이, 다른 종류의 복지시설들, 예컨대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 등의 시설이 지원금으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지자체가 소액이지만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는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며, 환경개선비가 중복지원이라고 폐지대상에 거론된다는 일 자체가 언어도단인 일인 것입니다. 원래 시설비 지원이 없는데 무슨 중복-유사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법정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수준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급식비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설립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개인 부담으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시설공사 및 설비를 구입하고, 설립 후 일정기간 동안 종사자 급여를 비롯한 모든 경비를 자부담하여 운영하다 2년이 경과된 후에야 법정 지원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건물이 월세라면, 월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센터운영자가 개인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늘려도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하면 태부족인 게 지역아동센터인데, 그나마 어려움을 덜어주던 지자체의 지원금을 유사 및 중복지원이라 하여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복지재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를 각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줄인다는 발상은 합리적도 아니고 발전적도 아닌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지자체 지원금은 법정 지원금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비교와 검토 없이 금액이나, 혹은 이름만 보고 폐지대상으로 하는 검토방식에서 각 분야의 지원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참고하여 당사자와 당국자가 함께 살펴보고 정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항목을 찾아서 정비하는 것이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안을 결의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수급가정,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어려서부터 관심과 보호는 이러한 아동들이 이탈되지 않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경찰서에서도 비행 청소년이 성장하여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지역아동센터를 더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안시의 60개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지원금 감축안을 재검토 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 발언 2.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생존권’입니다

심혜경 씨(중증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은 가족의 짐으로서 사는 게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잠든 사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까, 호흡기가 빠지면 어떻게 하나 등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다. 또한 하루하루 연로한 어머니에게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우리가 외치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은 덤이 아니다. 장애인들의 삶을 마이너스에서 0으로 끌어올리는 생존권의 문제다.”

- 故오지석 1주기 추모,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권리 쟁취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 -

■ 최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합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지원되어야 할 활동보조서비스 여전히 부족

2011년「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27.5%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함. 하지만 현실에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였고,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믿었던 '활동보조인'은 8위, 1.7%였음. 실제로 가장 최근인 2014년 5월 근육병장애인 故오지석 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인공호흡기가 빠져 끝내 숨을 거두었음.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10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음.

최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생존권

[전국사례]

- 2012년 9월, 허정석 씨는(30, 근육장애1급)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떨어져 사망.
- 2012년 10월, 화재가 발생했지만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밖으로 나오지 못한 김주영 씨(34, 뇌병변장애 1급). 살기 위해 스틱을 입에 물고 전화번호를 눌러 119에 신고까지 했으나, 고작 네다섯 발자국조차 움직일 수 없어 죽음에 이름.
- 2014년 4월, 송국현 씨는(뇌병변 및 언어장애)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불이 나 목숨을 잃음.
- 2014년 6월, 오지석 씨가(근육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집안에 홀로 있다가 호흡기가 빠져 숨짐.

[천안사례]

- 심혜경 (여, 만45세, 중증지체장애1급, 류마티스)

현재 심혜경 씨는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한 달에 520시간 지원을 받고 있음. 이는 약 19일 동안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나머지 12일 동안은 오롯이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임. 심혜경 씨는 류마티스가 점점 진행되며 현재는 식사, 이동, 세안, 신변처리는 물론 간단한 움직임도 혼자 불가능한 상태임. 신변처리가 불가능해 신우신염을 앓게 되고, 체위변경이 안 돼 욕창 수술을 받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64일간 병원생활을 해야 했음(1~2월 욕창으로 42일, 6월 신우신염으로 10일, 9월 욕창으로 12일간 입원). 기본적인 장애 외에도 활동보조인의 부재로 질병을 가진 환자로 전락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임.

- 박문희 (남, 만43세, 중증지체장애1급, 척수장애)

천안시에서 중증장애인24시간활동보조지원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척수장애를 가진 박문희 씨는 평생 꿈으로만 간직하던 자립생활을 결심하고 분가를 하게 됨. 현재 박문희 씨는 어깨 아래로는 감각이 없으며, 전동휠체어 조작 외에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활동보조인이 꼭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올해 천안시 추경으로 예산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인해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지역자원(기금)을 지원받아 매달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음. 부모님은 모두 68세로 연로하신 상황이며, 작년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이후로는 척추측만증이 심해져서 박문희 씨가 다시 본가로 들어가더라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다 큰 성인이 된 박문희 씨를 들어 올리고 휠체어로 옮기고 체위변경을 하는 등의 일들은 고령의 부모님이 감당하실 수 없는 상황임.

장애인이 말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사연1.

주어지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좀 먼 거리를 갔다 와야 하는 날이 많은데 1~2시간이 더 있으면 활동보조인 선생님에게 덜 미안할 것입니다. 어쩌다 바지가 젖어도 주어진 시간보다 많이 수고하고 갔기에 바지를 입겠다고 다시 오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음 날 출근하시면 부탁하곤 합니다. 몸이 아픈 날은 병원에 갔다 오면 너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1~2시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오직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사는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1~2시간이 절실한 문제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물가는 날마다 인상되는 형편인데 시간조차 제대로 안 주면 중증 이용자는 무엇으로 밥을 먹으라는 건가요? 시간을 제대로 주어야 보조인 선생님과 시장도 보고 반찬이라도 만들어 볼 텐데 말입니다. 제발 시간 갖고 장애인 눈에 이슬이 맺히게 하지 마세요.

사연2.

1급 장애인 저는 누군가가 밥을 챙겨 줘야 먹을 수 있기에 점심 한 끼는 끼니를 굶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생필품과 음식 재료 들을 구입할 때 1급 장애인 몸으로 물품들을 들 수가 없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매번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일들이 결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9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학교 앞으로 우산을 가져다주고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아이가 무서움에 떠는 사태가 벌어져 그 상황들을 겪어야 하는 엄마인 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니 활동보조 시간을 더 많이 늘여야 한다고 간곡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천안

천안시의 경우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행에 선구적 역할을 해온 지자체로 법제화가 되기도 전인 2003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역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충청남도의 부족한 지원량을 책임지며 한시적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음. (당시 충청남도는 활동보조서비스를 12개월이 아닌 10개월 동안 지원하여, 2개월의 공백기가 발생. 꾸준한 문제제기로 현재는 12개월 지원). 이는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시간이 최중증장애인에게 증대되고,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천안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될 만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풀뿌리를 힘으로 하는 사례임.

□ **경 과 : 민선6기 천안시장 공약사항, 천안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4천안시민관합동워크숍 공동의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등에서 지속적으로 "최중증장애인활동보조24시간 지원" 사업을 지역의 현안으로 선정.**

□ **현 안 : 전국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1]의 규정으로 실행 지연. 이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

① 장애인입장 (장애인복지의 퇴행), 지역행정부처입장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독소조항,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지방의회가 폐지를 주장해야 함)

②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시 표준화된 기준 부재, 지역적 형평성 부재.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100명의 장애인에게 지원 하고 있음.

③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안으로 내놓은 '응급안전서비스', '요양간병서비스'는 모두 최중증장애인을 '환자'로 보는 입장으로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생존권확보와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활동보조서비스'에 위배 됨. 또한 응급안전서비스는 즉시성이 떨어지며(응급 시 알람이 울리고 인력 출동), 요양간병서비스는 조건상 맞지 않음.(가사간병서비스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간병서비스는 유로로 24시간 7만원·주간 4만원 비용 발생, 복지간병사업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20일까지만 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추진 상황

2015. 09. 15. 기준

순번	지역	현재 인원	비고
1	**천안**	**0**	**현재 협의 중. 당초 1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1억4천8백만원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음**
2	서울	100	협의 결과 : 16년 사업 확대 불가 순회서비스, 공동주택 추진 등의 대안사업 검토
3	인천	3	협의 결과 : 권고 야간순회 서비스 등 대안사업 검토
4	광주	10	협의 준비
5	대구	0	협의 결과 불수용 통보에 따라 사업 미실시 (사업계획 인원 : 58명)
6	화성	1	협의 준비
7	부산	0	부산사회복지개발원에 용역 조사 중(10월중 완료). 사업전망 “불가”

당사자 발언 3. 노인

어려운 어르신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김종모 주임(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

과거 힘든 시절을 넘어 오늘날의 우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 낸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현대의 우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와 안정을 추구할 권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조손가정 수당지원]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새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과 실직, 가족 해체로 이혼, 빈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조손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해도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의 정서적인 지지와 배려부족으로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으로 되거나 방황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저소득 조손가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허덕이며, 한창 예민한 시기의 아이는 정서적 교감과 대화 부족으로 기가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4가정의 조손가정이 있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방황하며 속을 썩이는 손자녀들로 어르신들이 더욱 힘들어 하십니다. 세대차로 인한 양육의 문제도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고,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형편도 어려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상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서적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손가정 수당지원 월 3만원, 보잘 것 없는 액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소득 조손가정에게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도, 손자녀 유제품, 제철과일 등 필요한 영양섭취와 학교 교구비, 교통비, 문화 활동비, 정서교육비에 도움이 되는 귀중하고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조손가정의 균형적인 교육환경과 양육환경이 매우 절실합니다. 조손가정을 격려하며 조손가정 수당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9년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리 및 개선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신혼집 같다며 함박웃음을 내보일 때면 이보다 더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어르신 댁 수리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르신 가정은 환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창문이 달린 쾨쾨한 냄새가 나는 방 한 칸에 살고 있으며, 때론 집 안에서 화장실의 역겨운 냄새가 나는 어르신 댁, 부엌과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불편한 몸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양이 세수를 하고, 밤에는 요강을 사용하고 낮에는 상가건물 화장실을 사용하는 어르신이 있으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집 안 공기가 바깥 공기와 같이 차가워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면 집 안에서도 입김이 나는 어르신 댁, 주무실 땐 마스크를 써야 코끝이 시리지 않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무시며 정말 추운 겨울엔 친구네 집에 가서 주무시는 어르신, 바퀴벌레는 물론 쥐와 함께 동거하는 어르신, 오래된 도배로 변색된 도배와 장판, 낡은 싱크대, 외풍이 심한 주방,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 여름부터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셔야 할지 미리 고민하는 어르신, 재래식 변기는 물론 화장실이 없어 대변이 든 요강을 남들이 볼까 창피하여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상가건물에 요강을 비우러 가시는 어르신 등 '천안에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다니..'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단열 벽과 창문이 필요하며, 어디서부터 수리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어수선한 어르신 댁, 도배, 장판 교체, 소독, 편의시설 제공 및 설치가 절실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 가정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선 생계유지가 더 시급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 위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만나고 올 때마다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저의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더 안타깝습니다.

내 몸 아파도 혼자 견뎌야 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열악한 환경에서의 각종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고, 하루라도 쾌적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주시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단체에서도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폐지된다면 한 가닥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게 됩니다.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을 발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조손가정과 독거 어르신들의 복지현장 및 실태를 살펴주셔서 두 가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당사자 발언 4. 저소득계층(북한이탈주민)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저소득계층에게 미치는 영향

이선화 씨(북한이탈주민)

< M E M O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오윤경 상담원(충남성폭력상담소)

< M E M O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주제발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反복지적이고 非민주적인 정비방안[2)]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 변호사)

Ⅰ. 서론

□ 최근 정부는 이른 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정비방안 추진경과

– 제10회 사회보장위원회('15.08.11)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의결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15.08.13)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동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토록 함.

○ 정부가 발표한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6.5조원)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9,997억원(사업 수 25.4%, 예산 15.4%)임(<부표 1>, <부표 2>).

○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율 추진과 전혀 다름.

– 시·도별 조치필요 사항이라 하여 17개 시·도로 하여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케 하고 있으며

– 중앙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별 추진단(17개),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복지부·행자부 차관을 간사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점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처럼 마치 7,80년대 군대식의 강제적인 밀어붙이기를 보는 듯 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방안은 9월 25일까지 시·도별 정비계획안 제출, 10월 초 시·도별 정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1월 27일 정비결과 1차 제출, 12월 지자체 정비결과 사회보장위원

2) 본 발제문은 지난 10. 12.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발제문(이찬진 변호사, 남찬섭 교수 공동작성)을 기초로 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입장임.

회 보고, 2016년 1월 15일 정비결과 2차 제출 등 대단히 급박하게 진행될 예정임.

- 더욱이 11월 27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 정비결과 1차 제출 시 지자체는 9월 25일의 정비계획안에 따라 조정된 20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 1월 15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 정비결과 2차 제출 시에는 정비결과가 반영되고 지방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의 정비결과를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평가(지역복지사업평가(복), 지자체 합동평가(행))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더욱 최근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감액을 가능케 하는 등 불이익을 제도화하고 있음.

□ 이처럼 급박하게 그리고 상명하복식의 밀어붙이기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비방안은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반(反)복지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와 같은 반복지성은 사회보장사업에서 최우선가치는 주민의 복지욕구라는 점과 오늘날 사회보장(사회서비스) 발전에서 지자체의 기획력 향상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정비방안의 법률적 근거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은 지자체의 창의적인 사회서비스 제도화 시도가 장기적으로 전국차원의 제도화 및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및 그 민간기관들의 복지기획력과 복지적 창의성을 사전에 억압·말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킴.

Ⅱ. 정비방안의 反복지성

1. 주민의 복지욕구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비방안

□ 사회보장사업은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복지욕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에 의하면 유사성과 중복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유사성: 사업목적·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사업의 대상범위 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거나 급여유형·제공형태가 유사한 경우

– 중복성: 동일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목적 및 급여유형의 사업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유사·중복성의 정의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과정도 없었음. 게다가 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본질에 위배됨.

– 사회보장사업의 목적은 해당 수혜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으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규정되어야 함.

– 특히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복지욕구를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주로 사회서비스 사업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 사회보장사업은 개별화 원칙, 즉 서비스를 받는 주민 각자가 다른 주민과 상이하게 갖는 개인적 욕구에 주목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함. 이것은 바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사회보장이 갖는 본질적인 내용임.

– 이런 점에서 사업목적이나 기능이 동일한지 유사한지의 판단기준은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분류기준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욕구여야 함. 동일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사업도 그것이 동일한 목적 혹은 급여유형인지 여부의 판단도 주민의 복지욕구여야 함.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은 정부 스스로가 천명한 사회보장원칙에도 위배됨.

○ 현 정부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이 의원이던 시절 주도적으로 발의하여 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3] 수요자 중심적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을 도입하였음.

–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역사상 최초로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법에 따르면 그것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임(법 제3조 제5호).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법 제22조 제1항).

3) 현행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2844호)은 2011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음.

– 즉,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라는 주민들의 욕구를 고려하여(수요자중심) 그 욕구에 맞춘(맞춤형)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증진시키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임.

– 물론 현행 법령이 기본욕구와 특수욕구에 대해 더 이상의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은 한계이지만, 그것이 도입한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사회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사회보장사업이 견지해야 할 개별화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나아가 현 정부는 이러한 수요자 중심적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보다 구체적인 수단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즉, 현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4]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그 보호자 포함)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토록 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개별적 사정에 맞춘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하도록 관련 절차("신청-조사-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법 제5조부터 제9조, 제15조)[5],[6].

– 나아가 사회보장급여법은 신청-조사-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보장기관(국가기관과 지자체)은[7] 그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법 제4조 제1항),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8].

---

4) 사회보장급여법(법률 제12935호)은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에 따른 법률 제·개정 3법(이른 바 송파 세모녀 법) 중 하나로 2014.12.30 제정되었고, 2015.7.1.부터 시행된 법률임

5)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6조(사회보장요구의 조사),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이 신청-조사-지원절차는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먼저 규정된 바 있음[(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제33조의4(서비스 제공의 결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제33조의6(서비스 제공의 실시), 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따라서 주민의 복지욕구를 기준으로 한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이미 2003년 7월부터 마련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임.

7)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정의)
1~4. <생략>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키로 결정된 경우 그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9], 중복여부의 판단이나 중복 회피와 관련된 재량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 정부는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개별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급여가 상호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하도록 「신청-조사-지원」이라는 세부적인 절차까지 마련·시행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은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유사·중복성을 판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가 천명한 수요자중심주의에 위배되며 유사·중복성 판단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위배하는 방안임.

□ 정부의 정비방안은 주민(수요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의 확대에도 위배됨.

○ 오늘날 자기결정권의 확대는 유사시장(quasi-market) 원리의 도입과 거의 동의어가 되었지만 자기결정권이 반드시 시장원리와 동일시될 필요는 없음.

○ 하지만 시장원리와 동일시되든 그렇지 않든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확대는 사회보장급여의 다양성이 존재할 때 더 잘 실현될 수 있음.

○ 따라서 대단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다 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은 주민들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의미에서의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 실현에 위배되는 방안임.

2.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정비방안

□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10] 주민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임.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음[11].

---

9)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10)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1)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급여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고 할 것임.

○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방안은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됨.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이 정비대상으로 명시한 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보조 없이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임.

○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된 사회보장급여를 내용으로 신설'변경한 제도 및 동 제도에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한 자체예산은 곧 관할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자체예산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유사·중복성을 판단하여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 게다가 정부가 각 지자체에 통보한 정비지침은 정비대상 사업을 5가지 사업군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군별로 정비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됨

○ 정비지침이 분류한 사업군은 ① 사회보험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사업, ③ 중앙정부의 신규사업(맞춤형 기초보장급여)과 중복되는 사업,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의 사업 중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⑤ 자체발굴사업의 5개군임.

○ 정비지침은 이들 5개 사업군 중 ①과 ②에 대해서는 정비유형을 폐지권고로 정하고 있고 ③과 ④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변경이나 타사업과의 통폐합을 정비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⑤자체발굴사업은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고 있음(<부표 3>).

○ 이처럼 사업군에 따라 정비유형을 정한 것은 제도별 정비기준(<부표 4>)과 관련이 있는데 이 정비기준 역시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 먼저 정비지침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

---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3~6. <생략>

는 제도가 위에서 말한 ①번 사업군이며 이의 정비유형은 폐지권고임.

- 정비지침은 사회보험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분산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위험분산의 부담과 그와 연관된 보험급여의 혜택을 동등하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님.
- 예컨대 지자체가 해당지역 주민 중 저소득주민의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해서 그 주민의 위험분산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공동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놓고 보면 위험분산의 부담은 결코 줄어든 것이 아니며 지원 전이나 후나 동일함.
- 다음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정비한다는 정비지침의 논리 역시 정당화되기 어려움. 본인부담금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또 효과적이지도 않음. 즉, 그것이 제도 오·남용을 막는지 분명치 않음.
- 오히려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회보험이 바라지 않는 결과임. 따라서 본인부담금 지원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공동체 정신의 발휘는 장려해야 할 사안임.
- 다음으로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추가급여도 원칙적으로 정비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폐지권고를 해당 정비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음.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장수수당 등인데 정부는 이것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하지만 기초연금의 금액이 충분치 않은데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은 기초보장의 급여를 삭감시키는 주요인이고 또 기초연금이 당초 지자체가 지급하던 경로수당 등에서 온 것이므로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음. 더구나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유사·중복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폐지권고를 정비유형으로 정한 것은 참으로 납득키 어려움.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두 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기준들이 있음.

- 정비지침은 지역 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추가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기준은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도를 가로막는 대단히 악의적인 기준이라 할 것임. 뒤처지는 지역을 두고서 형평성을 이야기하지는 못할망정 추가급여를 그것도 자체예산으로 제공하려는 지자체를 두고서 다른 지자체는 추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니 지역 간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자체

의 실험적 시도를 억압하고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당해 급여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급여와 정말로 유사한 것인지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예: 맞춤형 기초보장제도의 교육급여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
-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지 제고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정비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의욕·자활의지 제고에 방해가 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제도설계 탓인 경우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게다가 복지사업은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여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자신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 또한 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정비결과를 1차로 제출케 하면서 이 때 정비결과는 9월 25일의 정비계획에 따라 조정된 20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고, 2차로 정비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정예산을 기준으로 하게끔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정비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 정비방안은 지자체로 하여금 사실상 예산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권리를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심각한 자의적인 행태임.

3. 정비방안의 허약한 법적 근거

□ 정부는 정비방안의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와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을 들고 있음.

□ 이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을 열거한 조항인데 여기에 열거된 호 가운데 제7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이며 제9호는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임.

○ 여기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열거한 내용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임.

- 중앙정부와 개별지자체 간의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특별규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임. 이 규정을 이번 정비방안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적용되는 시간적인 한계는 동 조항이 발효된 2013.01.27.부터이고 그 이전에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는 적용할 수 없음.

○ 제7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이 언급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은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느냐 여부를 떠나 사실상 비용분담에 해당하지도 않음.

○ 제9호는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인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전달체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29조에서 전달체계가 갖추어야 할 특성 등을 전달체계 구축을 규정하면서 다소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전달체계는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전달체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보장급여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임.
-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전달체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조직·예산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함[12].
- 이러한 전달체계 규정으로부터 어떻게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방안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지는 매우 불분명함.

□ 정부가 정비방안의 또 하나의 법적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3].

○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님.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함.

○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을 정비방안의 법률적 근거로 든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근거를 들기 위해 해당하지도 않는 조항을 끌어들인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임.

---

12)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언·권고·지도는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며 지방자치제를 규정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축소하라는 것은 자치사무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더욱이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하더라도 정비방안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자체의 자체사업이어서 지도·감독권의 행사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3-1. 허약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최근의 시도

□ 최근 정부는 정비방안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할 새로운 법적 근거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정비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우회하려는 회피전략이며 나아가 이러한 회피전략의 관철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을 재해석하는 무리한 시도까지 벌이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 미이행시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 추진. 지난 9월 30일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임.

○ 여기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 조항임.

○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들고 나온 조항임. 즉 그 조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심의·조정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심의·조정임.

○ 따라서 지금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강제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임. 이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이와 같은 비민주적이고 통제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정책을 강행하려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재해석하고 있음.

□ 이는 최근 법제처가 성남시에 보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하여 유권해석 회신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 즉, 법제처는 성남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협의"의 구속력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하여 지난 9월말 경 회신을 하면서 동 "협의"는 "합의" 내지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 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의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체계, 관련 사무의 성격, 행정권한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통상 협의를 요청하는 기관과 협의에 응하는 대상기관이 있고 해당 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협의대상기관에 속할 경우, 해당사무에 대한 검토는 개별 협의대상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때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6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의무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하여 정책과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고 책임을 지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협의를 통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할 것임.
-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배분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이때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일치" 즉, 협의의 결과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복지인력의 업무부담 가중, 지방재정의 악화, 급여의 중복·누락, 유사목적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협의"는 사회보장제도의 남발·남용 방지, 급여수준의 형평성 보장 등을 위한 이중적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임.

- 더욱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및 제26조 제3항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제도를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정결과를 사회보정제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서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법제처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은, 지역복지의 자율성 내지 독자성과 자치권을 부인하는 현 정부의 시각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대로 한다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본질적인 고유 자치사무인 주민 복지사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미흡한 현 정부의 복지급부 및 서비스 수준 이상의 지역복지를 억제하고, 복지의 전국적인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지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함.

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현실과 동떨어진 정비방안

□ 지자체의 세출예산을 세출구조별로 분류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책사업 예산이며 정책사업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됨.

○ 지방재정연감에 정리된 지자체 세출예산과 그 중 사회복지예산,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과 보조사업 예산의 추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표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사회복지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의 추이 (순계 기준)

(단위: 십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08-'13)(%)
계		144,454	156,703	149,780	156,257	167,015	176,992	4.1
사회복지	금액[1]	23,709	29,165	28,606	30,378	33,568	38,783	10.3
	비중[2]	16.4	18.6	19.1	19.4	20.1	21.9	
자체사업	금액	3,021	3,425	3,332	3,318	3,247	3,408	2.4
	비중[3]	12.7	11.7	11.6	10.9	9.7	8.8	
보조사업	금액	20,338	25,416	24,872	26,635	29,885	35,040	11.5
	비중[3]	85.8	87.1	86.9	87.7	89.0	90.4	

주 1. 모든 예상항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2. 사회복지예산의 계에 대한 비중임.
3.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의 비중은 둘 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임.

자료: 행정자치부. 각년도. 지방재정연감. 재정고(http://lofin.moi.go.kr).

○ 이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자체 세출예산총액(순계)은 연평균 4.1%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0.3% 증가하여 총예산 대비 비중이 2008년 16.4%에서 2013년에는 21.9%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증가함.

○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임. 즉, 중앙정부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사업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임.

– 보조사업예산의 '08-'13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중은 2008년 12.7%에서 2013년 8.8%로 하락함.

□ 따라서, 현재 정부는 그 비중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사회복지 자체사업에 대해 정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임. 그것도 모자라서 정비방안 불이행시 지방교부세마저 감축하려

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여 재정적으로도 독자적인 지역복지를 폐지 내지 대폭 축소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임.

○ 만일 정부가 사업의 유사·중복이 혼란을 초래한다고 인식한다면 그 주된 원인은 보조사업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됨.

○ 즉 중앙의 각 부처가 다소 경쟁적으로 혹은 상호간의 소통이 결여된 채 지방에 내려보내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의 사회보장사업의 혼란을 초래한 주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따라서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면 중앙정부 각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을 다시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근거로 동원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각 부처는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고 이들 각 부처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복지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가 큰 현재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임.

○ 다만, 관료조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통의 결여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실제 수행자인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중앙의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국고보조사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노력이 중요함.

○ 또한 인력보강과 같은 양적인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복지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노력도 필요함. 이처럼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복지 중심적으로 전환할 때 중앙정부가 말하는 유사·중복성이 주민의 복지욕구를 기준으로 판단되면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며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가 서서히 실현되어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임.

Ⅲ. 지역복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방안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의 협의·조정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각종 통제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유래함.

○ 2012년 1월 26일 전면 개정되어 1년 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복지인력의 업무부담 가중, 지방재정의 악화, 급여의 중복·누락, 유사목적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역복지 통제 장치임을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검토, 시사한 바 있음(1810801 국회 심사보고서, p. 60).

○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의 신설은 지역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충돌하는 규정으로서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 규정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및 급부가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지 확대보다는 지역복지 축소 내지 자율성 억압의 강제 수단으로 작용하여 복지의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 및 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임.

○ 이번 '정비방안' 파동도 결국 위와 같은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조항들을 중앙정부가 재정사정 및 복지팽창 욕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일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 조항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하여 이를 시정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임.

□ 정부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지역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해야 함.

○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역복지를 유도하고 이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요자 중심적 맞춤형 사회보장인 평생사회안전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토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은 수요자중심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해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신청에 대해 신청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복된 급여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신청-조사-지원절차).
- 나아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급여 관리와 품질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 사회보장급여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보장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으며(법 제45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법 제46조).
-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제2항).

○ 이러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임.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일관되면서도 최저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이 정책수단들의 실행을 위한 인력과 조직, 예산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 확보·구축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내걸고 있는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IV. 정비방안에 대한 전국복지수호 공대위 발족 및 향후 대응계획

□ 위와 같은 이유로, 정비방안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지역단체, 복지단체가 모여 전국복지수호 공대위를 발족함.

○ 현재까지 총 74개 단체 및 연대체 합류[14].

14)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비판과대안을위한

○ 10. 12.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싸울 것임을 밝혔으며, 같은 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하였음.

○ 10. 15.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및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초자치단체 26곳이 참여하여 2015. 10. 16.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각 단체별로 제출하였음.

○ 10. 21.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앞에서 정비방안 규탄 기자회견 및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개최함

○ 여야 원내대표 면담, 언론기획 등 후속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12월까지 총력을 다해 싸울 예정임.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비방안은 자율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발언을 하였음.

○ 지난 10월 12일 전국복지수호 공대위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서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관 과정은 다음과 같이 발언함.

“1500여개 모든 사업을 폐지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아니다. 일부는 중복, 일부는 효율화도 있으니 한번은 점검할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자체에 권고한 것뿐이고, 지자체는 재정여건이나 바뀐 환경에 비추어 검토를 하고 그것을 제출해주면 같이 컨설팅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강압적으로 없애라 한 적이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홈리스행동(가나다 순, 추가중)

협의조정 제도는 신설,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방안하고는 다른 문제다. 협의의 의미에 대하여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고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져온 것이고, 교부세법 시행령은 유사중복 사업 정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올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앙사업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하여 이번 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는 1조원이지만 목표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해주시면 된다. 절감된 자원이 있으면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사회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취지이다. 사회안전망은 더 넓게 펴져야 안전한 것이기 아닌가. 17개 시도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지자체 별로 온도차가 있다. 너무 열심히 하는 지자체에게는 우리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 그러나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회보장사업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교부세 감액 사유로 들고 있는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는 정비방안의 근거조항임. 따라서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비방안과 무관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정안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수정된 바는 없음.

□ 지자체 26개[15]가 10. 16.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함

○ 권한쟁의심판은 국기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재판절차임(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임(헌법재판소법 제63조).

○ 정부의 정비지침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함.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지역의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 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을 지적함.

○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을 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66조).

참고문헌

사회보장위원회. 2015.「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제2호 의안.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5.「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자치부. 각년도.『지방재정연감』. 재정고(http://lofin.moi.go.kr).

15) 참여한 지자체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시흥시, 광명시, 인천광역시 남구, 계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 성북구, 종로구, 성동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은평구, 영등포구(이상 26개 지자체).

<부표 1>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영역	사업유형	사업	예산
10개 영역	82개 유형	5,891	64,826
보호·돌봄(9)	아동 돌봄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프로그램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544	14,181
생활지원(33)	식사 지원, 위생 지원, 이동 지원, 출산장려 지원, 재가노인 지원 등	2,861	31,446
교육(7)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교육비(생활관련) 지원 등	241	741
건강·의료(6)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 지원, 보장구 지원 등	370	788
요양·돌봄(3)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89	1,103
주거(4)	주거비 지원, 주거자금 대출, 주택시설 개선, 에너지(난방) 지원 등	163	602
고용(7)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 직업능력·교육 지원, 자활근로 지원 등	352	4,674
문화·여가(5)	여가·문화 활동 지원(노인, 성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등	582	7,346
생계(5)	생활비용 지원, 생활자금 대출, 긴급구호 지원, 시설퇴소 자립 지원 등	344	2,086
재해보상(3)	재해구호 및 보상 등	345	1,859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2015).

<부표 2>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규모 (개, 억원, %)

	지자체 자체사업 (A)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 자체사업 (B)				유사사업 비율 (B/A*100)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계	5,891	100.0	64,826	100.0	1,496	100.0	9,997	100.0	25.4	15.4
보호·돌봄	544	9.2	14,181	21.9	219	14.6	3,684	36.9	40.3	26.0
생활지원	2,861	48.6	31,446	48.5	374	25.0	1,626	16.3	13.1	5.2
교육	241	4.1	741	1.1	157	10.5	539	5.4	65.1	72.7
건강·의료	370	6.3	788	1.2	188	12.6	553	5.5	50.8	70.2
요양·돌봄	89	1.5	1,103	1.7	73	4.9	1,016	10.2	82.0	92.1
주거	163	2.8	602	0.9	133	8.9	579	5.8	81.6	96.2
고용	352	6.0	4,674	7.2	93	6.2	356	3.6	26.4	7.6
문화·여가	582	9.9	7,346	11.3	21	1.4	30	0.3	3.6	0.4
생계	344	5.8	2,086	3.2	219	14.6	1,612	16.1	63.7	77.3
재해보상	345	5.9	1,859	2.9	19	1.3	2	0.0	5.5	0.1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2015).

<부표 3> 유사·중복 사업군별 정비유형

사업군	사업수 (개)	예산 (억원)	유사중복사업		정비 유형	비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체	1,496	9,997				
①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96	219	국민건강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폐지 권고	즉시 폐지가 곤란할 경우 단계적 폐지 추진 (예: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로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저소득층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②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74	393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③중앙정부 신규 사업과 중복 사업	191	768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지원 -보호아동중고등학생 참고서 지원 등	사업내용 변경, 타사업과 통폐합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
			주거급여	-사랑의 집짓기 사업 -희망의 집 임대주택 등		
④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1,068	8,617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사업	-노인 목욕서비스 -경로위생수당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주여성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긴급복지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⑤자체발굴사업					폐지/변경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 추진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5). p. 5, p.7의 표를 기초로 작성.

<부표 4> 제도별 정비기준 및 공통기준

제도	정비기준	공통기준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공공부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15.7)에 따라 기존 지자체 사업과의 상호보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추진 권고	제도의 통일성 지역 간 형평성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적합하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추가급여 지급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으로 정비
		유사·중복, 누락, 편중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기존 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급여대상자 확대는 가능 -공급기관보다는 수요자 지향 서비스 권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차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	지자체별 여건	지자체별 재정상황, 인구구조 등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간 변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정비
		비용·효과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정비 권고
		기타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혜자의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지 제고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점검을 통해 급여·서비스 방식 정비 권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 검토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5). p. 6의 표를 기초로 작성.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토 론

토론 1.

「반」복지적이고 「비」민주적인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방안 추진

양승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들어가며

2.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방안은 무엇인가?
   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방안(이하 정비방안)’이란?
   나. 정비대상사업은 무엇인가?
   다. 정비방안 추진 경위

3. 정부의 목적은 타당한 것인가?
   가. ‘정비’인가 ‘폐지(박탈)’인가?
   나. ‘중복’이 문제인가?, ‘부족’이 문제인가?

4. 박근혜 정부,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5. 복지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가. 기초보장 성격의 복지는 중앙 환원으로 국가 책임 아래 진행
   나. 필요에 모자라지 않는 복지 제공
   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과 복지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1. 들어가며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그간을 뒤흔드는 조치입니다.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복지정책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사업 예산 떠넘기기로 부담이 크다고 하자 정부는 그 대응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과 복지환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조차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하여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에서는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인장수수당 2만원을 기초노령연금과 중복된다고 하여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비는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보충적 개념의 지원인데, 이마저도 유사·중복사업 분류하여 지자체마다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가 최우선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추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예산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중앙과 지차제가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면 지자체가 여기에 보태 더 지원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색내기 수준이라면 지자체는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비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의 불충분함을 보충, 그것도 매우 미미하게 보충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효율성을 이유로 한 복지 사업 폐지에 다름 아니며,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면서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는 나쁜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방안은 무엇인가?

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방안(이하 정비방안)’ 이란?

○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방안(이하 정비방안)’은 중앙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 사업 등을 정비하고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임.

○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중앙 및 지자체 장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근거로

-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는 하였으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규제하고
- 협의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 위한 것이라 밝힘

<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 근거 법률 >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 할 수 있다

나. 정비대상사업은 무엇인가?

○ 정부가 정비사업을 위해 제시한 기준은 세 가지임

①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② 맞춤형 급여와 중복될 수 있는 사업

③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 사업 및 유사 중앙사업

○ 현재까지 확인된 정비대상 사업수는 1,496개 사업이고, 예산액은 9,997억 3,600만원임.

- 사업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복지사업 종사자, 보육교사 등 645만명에게는 정말 절실한 지원들로 단순히 중복이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임.

다. 정비방안 추진 경과 및 문제점

1) 정부의 정비방안 추진경과

○ 2013년 이후 사회보장사업간 유사·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 기존 사업은 유사 중복성 검토를 통해 정비
- 신규 보장 사업은 사전 신설 변경 협의 제도를 통해 차단
-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까지 중앙부처 사업을 정비하여 360개를 297개로 정비 (63개 감소 : 부처 간 37개 사업, 복지부 내 11개 사업)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협의·조정결과를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도 추가 통보하고, 그 조정 결과의 반영여부를 제출토록 개정(6.9일 공포·시행)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반영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마련' 과제가 2015년 협업과제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가점 ± 3점, '15.4월)

○ 복지부 지역복지평가 반영

- 지역복지사업 평가의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에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유사중복 정비 실적을 2015년 평가지표로 신설·반영('15.5)하고, 복지재정효율화부문 포상금액 상향조정(당초 3억 → 7억)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 신설 예정인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에 2개* 지표 반영 및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세 차등 지급 추진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이행실적, 유사중복 사업 정비 실적

○ 제10회 사회보장위원회('15.08.11)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 의결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15.08.13)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동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토록 함.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전협의결과 미이행 시 지방교부세 감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정('15.하반기, 행자부 협조)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ㅇ 시·도별 정비추진단 구성현황 제출	'15.8.21(금)
ㅇ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권역별 설명회 개최	'15.9월초
ㅇ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시·도별 간담회 개최	'15.9월말~10월초
ㅇ 시·도별 정비계획안 제출	'15.9.25(금)
ㅇ 시·도별 정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보고	'15.10월초
ㅇ 정비결과 제출(1차)	'15.11.27(금)
ㅇ 지자체 정비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5.12월
ㅇ 정비결과 제출(2차)	'16.1.15(금)

* 정비계획 및 결과 제출 등은 공문으로 송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보사연의 정비 관련 컨설팅은 정비 추진 기간 중 지속 실시

2) 문제점 : 지자체 자율을 무시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추진

○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차를 강제하고 예산지원 축소를 벌칙으로 내세우고 있음

- 시·도별 조치필요 사항이라 하여 17개 시·도로 하여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케 하고 있으며
- 중앙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별 추진단(17개),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복지부·행자부 차관을 간사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점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음.

○ 정비방안은 9월 25일까지 시·도별 정비계획안 제출, 10월 초 시·도별 정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1월 27일 정비결과 1차 제출, 12월 지자체 정비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2016년 1월 15일 정비결과 2차 제출 등 속전속결로 진행될 예정임.

- 더욱이 11월 27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 정비결과 1차 제출시 지자체는 9월 25일의 정비계획안에 따라 조정된 20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를 제출해야 함
-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의 정비결과를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평가(지역복지사업평가(복), 지자체 합동평가(행))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감액을 가능케 하는 등 불이익을 제도화하고 있음.

3. 정부의 목적은 타당한 것인가?

가. ‘정비’인가 ‘폐지(박탈)’인가?

○ 현재까지 확인된 정비대상 사업수는 1,496개 사업이고, 예산액은 9,997억 3,600만원임.

-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 요보호 아동 치료비 및 약값 지원,

.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

.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 제작 지원,

.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 보호아동 참고서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비,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 노인・장애인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어린이 공부방 운영지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 저소득 노인・장애인 집수리지원,

.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활동비,

.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지원,

.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

○ 정비가 아니라 '폐지'이고 '사전 박탈'

- 신규 사업 축소

. 2013년 전체 61건 가운데 42건(68.9%), 2014년 81건 사업(중앙부처 포함) 가운데 33건(40.7%)만 수용

. 강원도 횡성군, 청각장애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가족 없이 혼자 사는 65살 이상 청각장애인 28명에게 150만원 지급) 수용 거부

. 광주시, 지난해 9월 사전 협의 없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비 지원 시작(대구시는 3명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를 지원하다가 복지부에 협의했더니 중단하라 통보받음)

. 2013년 법 시행 뒤 추진된 다른 지자체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2건의 경우 1건은 한시적 사업으로 '수용'되고, 1건은 "중앙 유사사업과의 중복"으로 '추가 협의' 결정

○ 가난한 자에 대한 지원을 줄여 더 가난한 자를 지원하겠다?

- 우리나라 빈곤층은 이미 한계 상태에 도달함

. 통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2013년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OECD 평균 10.6%보다 4%P 높음.

. '2014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2013년 절대빈곤율은 7.7%로 2010년 이후 7% 수준을 유지.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09년 3.2%에서 매년 감소하여 2.6%까지 떨어짐.(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7년 15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계속 감소 추세)

. 가난한 사람의 수는 줄지 않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계속 줄어들어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수]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급자수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 빈곤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결국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냐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5%로 OECD 평균 23.7%의 절반 이하임.

. 중복·유사 복지사업을 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빼앗아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발상임.

- 정부의 빈곤해소 정책 효과는 미미

.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인한 이후 결과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16.4%로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P에 불과하여 OECD 국가 3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빈곤율(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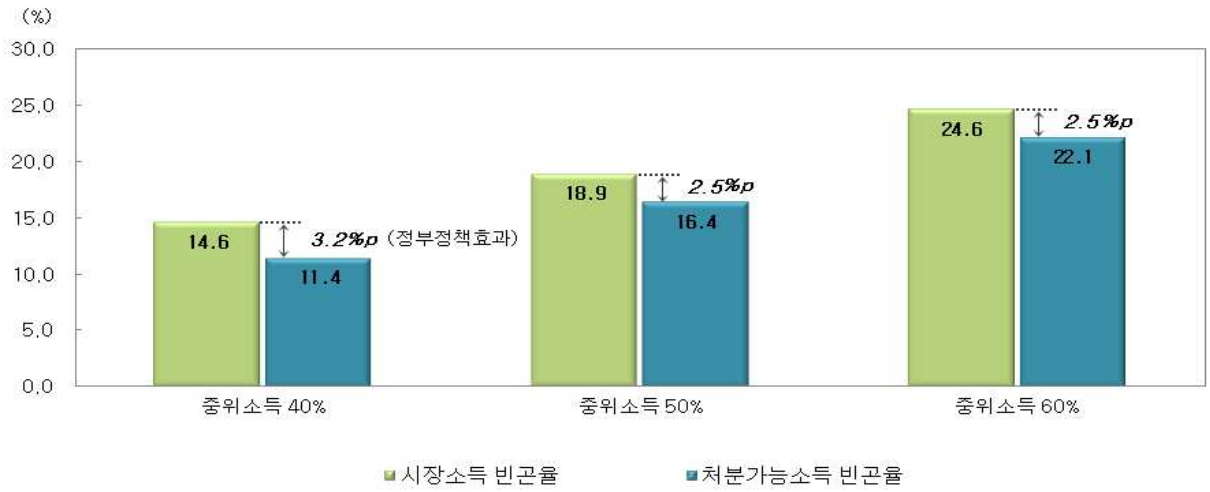

.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정책 적용이후 절반 이상, 26.4%에서 10.6%로 15.8%P 떨어짐.

. 시장소득기준 빈곤율은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음.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정부 정책이 개입한 이후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이 확연히 낮아짐. 스웨덴은 26.7%에서 5.3%로 1/5 수준, 프랑스도 30.7%에서 7.1%로 23.6%P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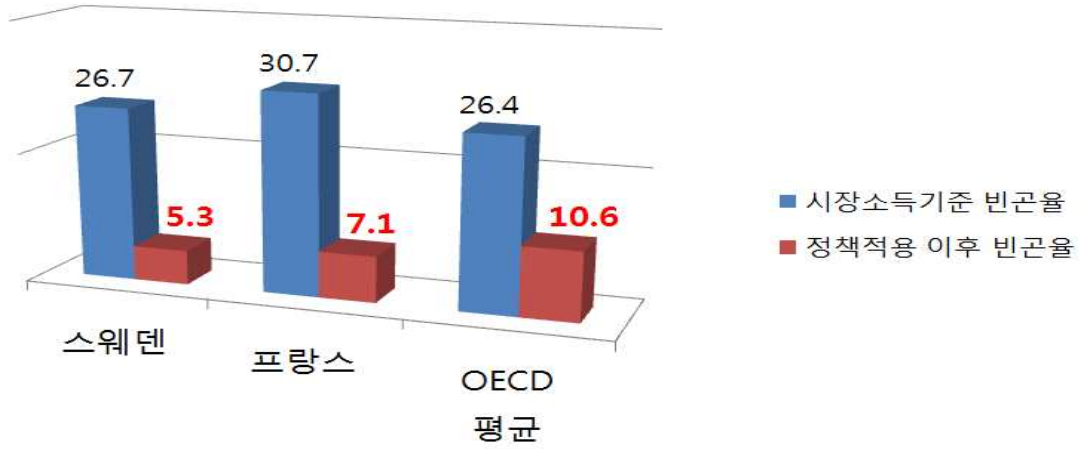

.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해소효과도 마찬가지. OECD 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은 70.1%이지만, 공적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면 12.1%, 1/6 수준으로 낮아짐.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율이 61.3%여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공적연금을 포함한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보다 4배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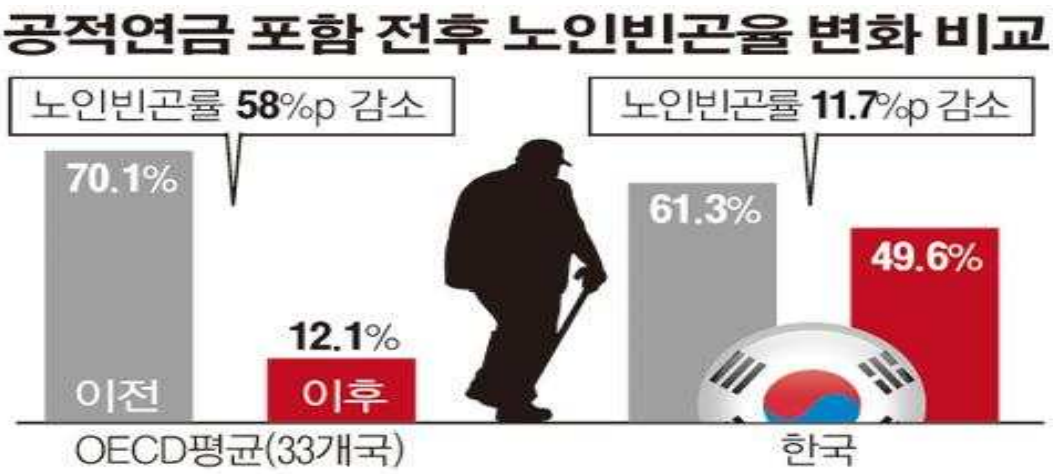

나. ‘중복’이 아니라, ‘부족’이 문제!

○ 사회보장사업은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복지욕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이 복지사업의 대상인 주민, 특히 저소득층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실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임.
- 특히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복지욕구를 직접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런 점에서 지자체가 수행중인 혹은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분류기준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욕구여야 함. 동일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사업도 그것이 동일한 목적 혹은 급여유형인지 여부의 판단도 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가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이어야 함.

○ 사각지대는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무리하게 적용하는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발생함.

- 2010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06년 103만명에서 2010년에는 117만명으로 늘어남.

[빈곤 사각지대 규모]

(단위 : %, 가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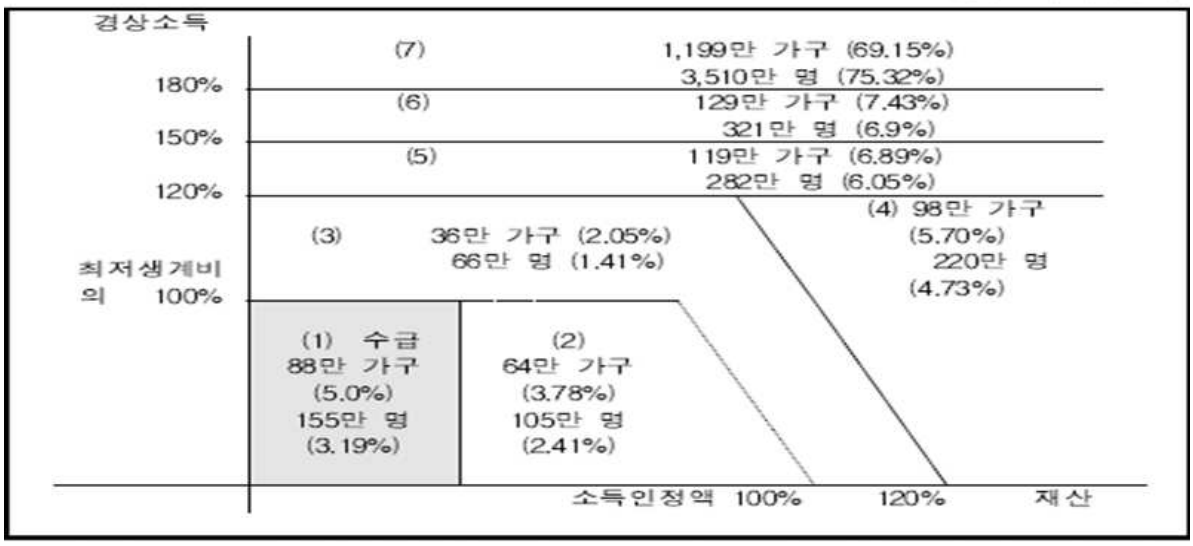

-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에도 지난해 10월에는 집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수습할 이들에게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시라’는 메시지와 돈을 남기고 자살했고, 올해 1월에는 대구에서 지적장애 1급 언니와 살던 20대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

- 지난 2월 7일에는 수급비 49만 원 중 의료비를 30만 원씩 지출해야 했던 기초생활 수급자 70대 노인이 화장실조차 없는 단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됨.
-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2,610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은 37,999명(11.8%)이었음. 이에 비해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취업·창업,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벗어난 수는 20,774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신규 취업으로 수급을 벗어난 수는 2013년 8,763명 5.2%, 2014년 8,370명(5.5%), 2015년 3,910명(5.1%)이었으며, 자활자립자 수도 2013년 2,087명(1.2%), 2014년 1,554명(1.0)%, 2015년 889명(1.2%)이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현황 및 탈락사유(2013~2015.6)

(단위: 명)

연도	계	신규 취업·창업	자활 자립	실질적 소득 증가 없는 탈락							
				소득·재산 증가*	부양 의무자	사망	입대	말소 행불	자녀 성장	교정 시설 수용자	기타
2013	169,655	8,763	2,087	47,437	21,971	36,497	7,371	3,290	971	3,758	37,510
2014	152,955	8,370	1,554	39,290	16,028	36,382	7,527	2,610	662	4,250	36,322
2015.6	76,397	3,910	889	17,846	7,790	18,235	3,337	1,283	245	2,433	20,429
누계	322,610	17,133	3,641	86,727	37,999	72,879	14,898	5,900	1,633	8,008	73,832

* 소득·재산증가는 추정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증가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 소득 증가가 없는 것으로 구분. 보건복지부는 매년 2만 가구 이상에게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115억 가량을 부과함(별첨)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수정(원본 별첨)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수는 2013년 9,875 가구, 2014년 7,617 가구로 전체 신청 탈락 가구 122,519가구의 14.3%에 달함.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 가구의 사유별 현황]

(단위: 가구)

연도	탈락가구 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탈락
2013	61,950	9,875
2014	60,569	7,617
누계	122,519	17,492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소득인정액은 적합하나, 부양능력 '있음'인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가구

○ 사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 2011년「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27.5%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에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였고,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믿었던 '활동보조인'은 8위, 1.7%였음.
-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지 못해서 사고로 사망한 사례.

- 2012년 9월, 허정석 씨는(30, 근육장애1급)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떨어져 사망.
- 2012년 10월, 화재가 발생했지만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밖으로 나오지 못한 김주영 씨(34, 뇌병변장애 1급). 살기 위해 스틱을 입에 물고 전화번호를 눌러 119에 신고까지 했으나, 고작 네다섯 발자국조차 움직일 수 없어 죽음에 이름.
- 2014년 4월, 송국현 씨는(뇌병변 및 언어장애) 장애등급재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불이 나 사망.
- 2014년 6월, 오지석 씨가(근육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집안에 홀로 있다가 호흡기가 빠져 숨짐.

-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10명.

. 중증지체장애 1급에 류마티스를 앓고 있는 000(40대)씨는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한 달에 520시간의 활동보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약 19일 동안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나머지 12일 동안은 오롯이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

- 정부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임. 올해도 천안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가로막음.

다. 지자체 재정 어려움은 지자체 복지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때문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자체 세출예산총액(순계)은 연평균 4.1%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0.3% 증가하여 총예산 대비 비중이 2008년 16.4%에서 2013년에는 21.9%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증가함.

○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사회복지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의 추이]

(단위: 십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08-'13)(%)
계		144,454	156,703	149,780	156,257	167,015	176,992	4.1
사회복지	금액[1]	23,709	29,165	28,606	30,378	33,568	38,783	10.3
	비중[2]	16.4	18.6	19.1	19.4	20.1	21.9	
자체사업	금액	3,021	3,425	3,332	3,318	3,247	3,408	2.4
	비중[3]	12.7	11.7	11.6	10.9	9.7	8.8	
보조사업	금액	20,338	25,416	24,872	26,635	29,885	35,040	11.5
	비중[3]	85.8	87.1	86.9	87.7	89.0	90.4	

주 1. 모든 예상항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2. 사회복지예산의 계에 대한 비중임.
3.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의 비중은 둘 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임.

자료: 행정자치부. 각년도. 지방재정연감. 재정고(http://lofin.moi.go.kr).

- 즉 중앙정부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으로 ,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사업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임.

. 보조사업예산의 '08-'13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중은 2008년 12.7%에서 2013년 8.8%로 하락함.

○ 국가가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책임져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많은 지자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문제임.

4. 박근혜 정부,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 복지공약 파기에 더해,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혜택의 축소를 꾀하고 있음

- ① 지방정부에서 재량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1,496개 복지사업의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음. 내년 통폐합이 완료되면 약 1조원 가량의 복지혜택이 사라지게 됨.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연인원 약 645여만명이 피해를 입게 됨. 지방정부 재량사업의 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정부의 조정지침 이행 여부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교부세 교부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지침 이행을 강요하고 있음(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지방자치 침해 소지도 다분함

> ※ 우리나라 복지사업은 국고보조 사업, 지방이양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됨.
> - 국고보조 사업과 지방이양 사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3개 정부부처에서 360여종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집행은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짐).
> - 지자체 자체 사업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조례 등에 근거함)하는 사업으로서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복지사업의 수를 합산하면 총 5천여 개 되는데, 중앙정부가 이 중에서 1,496개를 내년 안에 통폐합한다는 것임

- ②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현행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듦. 전업주부는 물론, 취업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약 700만명)나,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약 680만명) 상당수의 피해가 예상됨. 또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어린이집 재정지원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보육교사 임금이 하락하여 보육서비스 질 전반이 하락하는 문제도 예상됨.
- ③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10인 미만 고용 & 월임금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내년부터 축소됨.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40%로 축소.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153만명, 77만개 사업장의 피해 발생이 예상됨.
- ④ ②·③과 관련된 0~2세 보육료지원 예산과 저소득층 사회보험료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장애분야 12개 사업, 요보호아동자립지원 등 아동분야 3개 사업, 경로당냉난방비 등 노인분야 8개 사업,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분야 5개 사업,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지원 등 사회복지일반 3개 사업 등 삭감되는 복지예산이 속출함. 긴급복지·영유아건강관리 등 동결되는 예산도 다수임.

.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2015년 예산(추경포함) 대비 증가율이 1.8%로서, 지난 10년

간 평균증가율 13.9%의 1/8 수준에 불과하며, 일반예산은 2015년 보다 오히려 3% 감소함.

[연도별 복지지출 증가 추이]

(단위 : %, 조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지출액)	10.2 (56.0)	9.6 (61.4)	12.1 (68.8)	16.9 (80.4)	8.9 (81.2)	6.3 (86.4)
보건복지부총지출 증가율(지출액)	10.4 (16.6)	14.0 (19.0)	31.2 (24.9)	19.1 (29.6)	5.4 (31.2)	8.2 (33.6)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06~평균)	2016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지출액)	7.2 (92.6)	5.2 (97.4)	106.4 (9.3)	115.7 (8.7)	9.4	6.2 (122.9)
보건복지부총지출 증가율(지출액)	9.3 (36.7)	13.0 (41.5)	14.2 (46.9)	14.0 (53.5)	13.9	1.8 (55.6)

○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재벌감세·부자감세 철회 불가(증세 없는 복지 고수) 입장이 복지축소를 불러옴. 중산서민층 민생복지 축소에는 새누리당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함. 김무성 대표가 올 초부터 기회만 되면 과잉복지 운운하며 복지혜택을 줄여야 한다며 공언하는 등 복지축소를 주도하였음.

5. 복지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의 협의·조정을 일단 중지하고, 폐지를 검토해야 함.

○ 정부가 지적하는 유사·중복 복지사업들은 불필요한 이중 복지가 아니라 절실한 보충 복지임.

- 왜 지자체들이 저소득 계층에 건강보험료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동절기 난방비, 활동보조 시간 지원에 나설까?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님. 중앙정부의 복지가 여전히 빈약하고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임.

○ GDP 대비 10.5%만 지출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비를 OECD 평균(23.7%) 수준으로 올리면서 시장소득 기준 18.9%인 빈곤율을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의 빈곤 완화 정책을 설계, 시행해야 할 것임.

가. 기초보장 성격의 복지는 중앙 환원, 국비 부담 확대 등으로 국가 책임 아래 진행

○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 기초적인 보장 성격을 갖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중앙 사업으로 환원할 필요

- 장애인, 아동, 노인 관련 지방이양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앙사업 환원이나 국비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중앙 사업 중 기조생활보장 예산,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사업은 국비 부담 비율을 올려야 함

나. 필요에 모자라지 않는 복지 제공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처럼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4시간 지원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시 생계급여 삭감 규정 등 복지지원 확대를 저해하는 규정은 폐지

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과 복지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업은 지역에 따라 50~100개. 복지공무원 한 명이 책임져야 하는 사업 수만 20~30개.

- 정부는 2011~2014년 복지 인력을 7,000명 증원, 2017년까지 6,000명을 더 증원 계획.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복지인력은 2014년 3만 170명으로 2010년 2만 2,843명에 비해 7,327명 증가

-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자 강혜규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 10,821명, 읍사무소는 1,947명, 면 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 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

.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 당 OECD회원국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평균 12명. 우리는 0.4명에 불과해 1/30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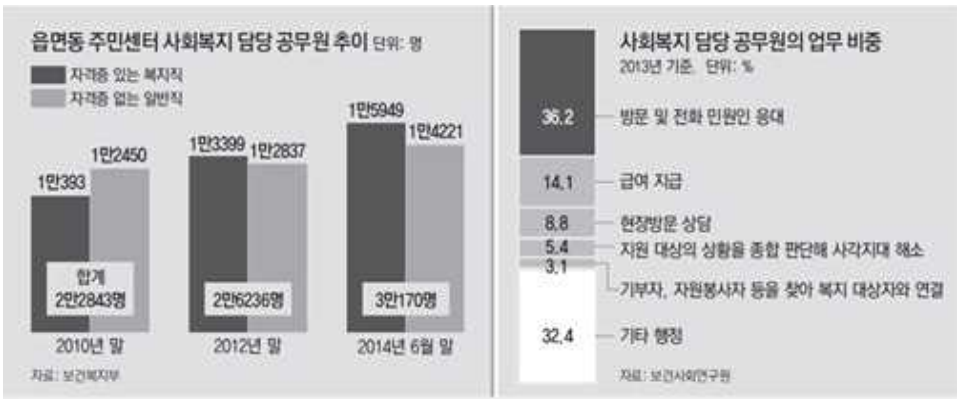

토론 2.

지역복지를 축소하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의 문제점

김연 도의원(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난 8월 11일 정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되어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해당 자치단체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번 추진방안의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충남도의 유사중복 정비 대상사업은 총 41건으로 152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거노인의 안전과 생활환경 정비사업,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와 요보호아동 대상 사업, 중증장애인 수당,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지원, 월세 거주 장애인 지원, 장애인 재활사업, 차액보육료지원 등 주로 우리사회에서 돌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600만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약 2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 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도 예산을 삭감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오히려 복지 소외계층을 차별하여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양성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복지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

치지 않거나 불수용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있는 규정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했을 경우에도 교부세가 깎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빌미로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간섭할 여지가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도 높은 요구사항에 협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국민이 임시로 중앙정부에 국세로 냈다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내용은 중앙정부 허가 없이는 사실상 지자체가 스스로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항이며, 중앙정부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자해지! 대책 없었던 대통령 공약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먼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재정도 나아질 수 있고 정부가 무리하게 지자체의 자율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정안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충남도 복지재정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

복지부 유사중복사업 정비권고, 도·시·군 기능 재정비, 국 자체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 총 41건 152억원(도비 73억원)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 재추진

■ 총 괄 : 대상사업 311건 618억원 중 41건 152억원 절감

[1] 보건복지부 권고사업 113건 326억 중 16건 100억원

[2] 도, 시 · 군 기능 재정립 20건 55억 중 13건 50억원

[3] 국 자체, 사업 성과분석 178건 237억 중 12건 2억원

■ 분야별 검토사항

[1] 보건복지부 권고사업 (국가사업과 유사중복) : 16건, 100억원

❶ 폐지 : 12건 84억원(도 17, 시군 67)

1) 도비 사업 : 6건 56억원(도 17, 시군 39)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대책
계	5,600	
1.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400가구)	26	재가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 일원화
2.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200가구)	400	고령장애인 주거개선사업으로 일원화
3.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13천명)	3,333	영유아보육료사업으로 일원화
4.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50명)	250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안내
5. 지역아동센터 컨설팅(50개소)	30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자체 추진
6. 중증 장애수당 추가 (11,740명)	1,561	해당자에게 사전 고지(안내)

2) 시·군 사업 : 6건 28억원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대책
계	2,804	
1. 사랑의 집짓기 사업(보령)	40	주거금여사업 일원으로 일원화
2.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지원(보령)	80	고령장애인 주거 개선사업으로 일원화
3. 효도수당(서산)	15	폐지
4. 장수노인수당(서산)	1,418	대상자를 1930년 이전 출생자로변경
5. 장수노인수당(공주)	480	20년 이후 폐지
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논산)	771	16.6.이후 폐지

❷ 변경(축소) : 4건, 16억원(도 4, 시군 12)

1) 도비사업 : 3건 15억원(도 4, 시군 11)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변경내용
	당초	변경	
계	2,851	1,367	
1. 대체교사 인건비(일5만원)	360	245	복지부 미 지원 인력만 지원
2. 장애인 월세 거주비(월5만원)	1,326	847	주거급여 중복대상자 지원중지 2,960명 → 1,520명(감 1,440명)
3.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연131천원)	1,165	275	에너지바우처 중복대상자 지원 중지9,280명 → 2,100명(감7,180명)

2) 시·군 사업 : 1건 1억원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변경내용
	당초	변경	
계	238	133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지원(보령)	238	133	총 2,960명 중 1,440명 제외

[2] 도, 시·군 기능재정립 : 13건, 50억원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계	5,024
1~2. 경로당 운영비 지원 (5,553개소) 및 물품지원(500개소)	1,470(3:7)
3~4. 노인복지관 운영지원(13개소) 및 빨래차 지원(17대)	1,042(2:8)
5. 어려운 아동 문화탐방(천안, 공주, 부여, 태안)	3(3:7)
6. 시군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15명)	236(3:7)
7. 시군장애인 재활사업비(15시군)	144(3:7)
8~9. 시군수화센터 (14개) 및 심부름센터 보강(4개시군)	855(3:7)
10. 시군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14개소/78명)	1,112(3:7)
11~12.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9,150명) 및 노인방문진료(130명)	90(2:7)
1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원(100개소)	28(5:5)

'16년 시군위임 예산편성

[3] 국 자체 성과분석을 통한 일몰 : 12건, 2억원

▲ 효과미비(6건) : 다자녀 가정시상, 수화통역, 장애인 장루요루 관리 등

▲ 업무중복(4건) : 어린이집 교재지원, 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등

▲ 예산절감(2건) : 식품안전관리 정책운영, 심폐소생술 캠페인

■ 향후 계획 : 11월 중 예산 규모 확정,' 16. 본 예산 반영 추진

❍ 전문가 협의 및 컨설팅(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후 최종안 도출

❍ 절감재원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

토론 3.

정비방안 관련 천안시 여성가족과 예산편성 방향

김순남 과장(천안시 여성가족과)

< M E M O >

토론 4.

정비방안 관련 천안시 노인장애인과 예산편성 방향

박미숙 과장(천안시 노인장애인과)

< M E M O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별첨자료

[별첨자료 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천안시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 중앙과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코자 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95호, 충남도 사회복지과-13486호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시책 심의조정)
○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 단계별 정비 계획

○ 보건복지부 지정 우선 정비 대상 : 7개 사업

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② 결혼이민자 한국어 소그룹 교육
③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 인형극 운영	④ 육아 사랑방 운영
⑤ 조손가정수당 지원	⑥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⑦ 장수수당 지원	

○ 미 지정 정비 대상 : 6개 사업(추후 타 지자체의 정비와 연계 추진)

① 보훈 수당	② 긴급 지원(긴급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암환자 지원사업)
③ 노인 목욕비 지원	④ 저소득층 특수 촬영 의료비 지원
⑤ 노인 이·미용권 지급	⑥ 시설 아동 건강바구니 지원

○ 복지 체감도가 낮은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비

□ 추진현황 및 계획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 수립, 부서 통보 : 2015. 9. 1
※ 보건복지부 건의(명확한 지침 시달) : 2015. 9. 1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권역별 설명회 참석 : 2015. 9. 4
○ 시민홍보 등 정비 추진전략 방침 결정 : 2015. 10. 6

① 의회 간담회 : 2015. 10. 12
② 행복키움지원단장・부단장 설명회 : 2015. 10. 29
③ 이・통장 협의회 설명회 : 11월 월례회의
④ 대상 가구별 안내 공지 및 안내문 발송 : 2015. 12월중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기존 수혜자 아쉬움 표출

○ 정비실적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지자체 평가 시 반영(미정비 시 큰 부담으로 작용)

○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미정비 지자체 교부세 삭감 예정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제9호(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신설 입법예고 중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신규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규정으로 사업시행 180일 이전에 협의해야 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중앙정부의 취지

○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 추진

○ 복지사업 조정 등에 따른 재정 효율화 및 부정적 인식 해소

[별첨자료 2] 지자체 정비사업(충청남도, 천안시)

총 35건 : 천안시 7건, 충청남도 3건, 시 · 도 매칭 25건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세부분류	대상	내용	시도 예산 (백만원)	총예산 (백만원)
천안시	결혼이민자 한국어소그룹교육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한국어교육 지원		18
천안시	어린이성폭력예방 성인형극운영	폭력피해-예방지원	도내3개시(천안,공주,계룡)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저학년	순회 방문하여 성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성교육을실시		18
천안시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출산장려 지원	관내6개월 계속거주 등록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유고시친권자	장애 1~2급: 150만원 장애 3~4급: 120만원 장애 5~6급: 100만원		131
천안시	육아사랑방운영	아동 돌봄 지원	관내 영유아 및 부모	도담도담놀이터운영, 부모카페운영(상담및정보교류)		45
천안시	장수수당 지원	장수수당	관내1년 이상 거주한 만85세 이상 노인	85세이상:월3만원100세 이상:월10만원		720
천안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월1만3천원이하 저소득65세 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국가유공자,소년소녀가장,조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243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수당 지원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월 3만원		31
충청남도	사랑의 인술사업	의료비 지원	화상정형분야18세이하저소득(차상위300%이하)장애아동	검진료, 치료비 지원		300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만9세 이상24세이하학업중단,가출,인터넷중독등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쉼터운영		20
충청남도	충남수화통역센터운영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청각언어 장애인 및 비장애인	수화통역 및 상담지원		253
시·도 매칭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노숙인 지원	관내 노숙인	거리노숙인 상담, 입소노숙인 관리 및 보호, 급식 지원, 남성 전용 수용시설	44	220

시・도 매칭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자체)	가사돌봄 요양서비스(비용) 지원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주기적안전확인(가정방문, 유선 등),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	1,154	5,770
시・도 매칭	다문화 어울림사업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및 시민	다문화인식개선사업,다문화가족자녀지원,취업지원,한국어교육	1,118	5,590
시・도 매칭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지원	보육교사 교육, 병가, 경사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	업무관련교육 10일 이내, 병가 5일 이내, 특별휴가 5일 이내 대체인력 지원	360	1,800
시・도 매칭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지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제공인력	교통비, 전화비, 퇴직금 지급	1,326	2,652
시・도 매칭	독거노인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독거노인 가정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26	87
시・도 매칭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시설 개선	65세이상저소득독거노인	독거노인의주거환경개선사업	400	1,333
시・도 매칭	모자가족복지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계룡시세화주택에입소한가정의)초,중,고생자녀-초중등교육법제2조규정에의한학교에입학하거나재학하는자및이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각종학교-위의학교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각종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에따라「교육감에의해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로지정된평생교육시설	연 60만원/인	13	63
시・도 매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신규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 지원비 지원(50만원/연), 의료비 지원, 자원봉사단활동지원, 가족사랑 힐링캠프, 자격취득 지원	30	30
시・도 매칭	외국인근로자 상담활동 지원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통번역 지원, 교육(한국어,태권도, 컴퓨터), 국제전화무료지원, 의료무료지원	40	80
시・도 매칭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대학교에입학한양육시설아동,소년소녀가정아동,가정위탁아동	대학교 입학금 지원	75	250
시・도 매칭	장애인생활안정지원(월세거주장애인거주비지원)	주거비 지원	세대주가등록장애인으로월세거주장애인가구(세대원이장애인이면지원대상이아님)	월 3.5만원/세대	428	1,426

시·도 매칭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수당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월 1만2천원	468	1,561
시·도 매칭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에너지(난방)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가구(시설수급자인경우제외)	연 13만원/세대	349	1,165
시·도 매칭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입학자	-입학 학교 및 타 기관·단체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는 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입학금 및 등록금이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실비 지원	100	200
시·도 매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시간 추가제공	1,102	3,673
시·도 매칭	지역아동센터 교구교재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구 교재비	67	223
시·도 매칭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219개소	6개월(1,2,6,7,8,12) 냉난방비(이용아동 수에 따라 단가 차등)	38	190
시·도 매칭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219개소	4대 안전점검비용인 소방, 전기, 가스, 소독 점검 비용	13	43
시·도 매칭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219개소	신규 종사자 교육, 토론 등 운영노하우 전달 등	9	30
시·도 매칭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	토요프로그램, 교구교재비, 하계수련활동비, 환경개선비	67	335
시·도 매칭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직업능력-교육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50	250
시·도 매칭	취업설계사 배치·운영	일자리 지원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또는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 여성	취업 훈련프로그램, 사후관리	58	193
시·도 매칭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 유지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	법정 저소득층 월 4만원/ 인 그 외 월 2만원/ 인	3,248	10,827
시·도 매칭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	사례관리 및복지행정 지원	희망의 징검다리 위원, 복지도우미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재능기부 등 후원자	기본교육비, 사업홍보를 통한 복지 사각 지대 발굴	98	327

* 자료출처 : 김용익 국회의원실

[별첨자료 3] 지방자체단체 유사 ·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2015. 8.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사 무 국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현황) 그 간 사회보장사업은 양적·질적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 증가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 연금·건강 등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분야도 대폭 확충

* '15년 정부 총지출 375.4조원 중 복지분야는 115.7조원(30.8%)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7.0%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를 상회

○ (지방자치단체) 자치제 도입 20년간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 '15년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

□ (문제점) 지속적인 복지사업 확충으로 복지제도의 외형적 틀 완성 등 성과도 있었지만 투입 대비 효과성 등 내실화는 미흡

○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이 부처별로 시행되어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사업간 전달체계의 연계성 미흡

○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도 다수 발생

□ (개선방향)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효율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필요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를 추진

○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

2 그 간의 경과

□ 사회보장위원회는 '13년 이후 사회보장사업간 유사·중복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

○ 기존 사회보장사업은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 신규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통해 유사·중복 문제를 사전에 차단

□ 기존 사회보장사업과 관련, 우선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하여 360개 사업을 297개 사업으로 정비(△63개)

○ 사회보장사업(360개)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유사·중복 후보 사업군 발굴('14.11~'15.2)

○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비 필요사업 선정(20개 사업군, 48개 사업*)하여 정비 추진('15.2～'15.5)

* (부처 간) 37개 사업, (복지부내) 11개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정비 추진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5.4～7, 복지부·보사연)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

- 그 결과, 전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은 5,891개 사업으로 파악

<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 근거 법률 >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 할 수 있다

Ⅱ.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침

기 본 방 향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 추진**

* (구성) 사보위 사무국, 17개 시・도(단장: 부단체장), 관련부처, 보사연 등

◇ 금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동 재원을 활용한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협의절차 간소화

1 정비 방향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 추진

○ (통·폐합)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중앙정부 신규사업(맞춤형 복지)과 중복사업 등

○ (효율화)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종류, 수준, 전달체계 등 정비

□ 금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 추진

* 협의회 지원을 위해 보사연 주관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시·도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비결과를 사후검증

2 정비 대상

□ '15.4~7월 실태조사(복지부·보사연) 결과 파악된, 지자체에서 국고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 (유사·중복) 연구용역 결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 정비대상 사업 목록은 별도 송부(보건사회연구원), 동 목록 참조·정비 추진

○ (자체발굴) 지자체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3 정비대상 사업군

① 사회보험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163개 사업, 219억원)

-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74개 사업, 393억)

- 중앙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기초연금)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사 성격의 현금성 급여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맞춤형 복지)과 중복 되는 사업(191개 사업, 768억원)

-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15.7월)됨에 따라 동 제도와 중복 될 여지가 있는 지자체 사업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의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1,068개 사업, 8,617억원)

◇ **(보훈수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훈수당 등은 지자체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금번 정비대상에서 제외함.

<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 >

정비기준	사업수	예산 (억원)	유사중복 사업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 체	1,496	9,997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63	219	· 국민건강보험	·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지원 · 저소득계층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74	393	· 기초연금	· 장수수당 등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191	768	· 교육급여(교육부)	· 저소득층 교육지원 · 보호아동 중고등학생 참고서지원 등
			· 주거급여(국토부)	· 사랑의 집짓기사업 · 희망의집 임대주택 등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1,068	8,617	·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돌봄사업	· 노인 목욕서비스 · 경로위생수당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이주여성 한글교실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 긴급복지	·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4 유사·중복 정비기준

□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별로 정비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정비

<table>
<tr><th>구 분</th><th>정비기준</th><th colspan="2">공통기준</th></tr>
<tr><td>사회보험</td><td colspan="3">▪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td></tr>
<tr><td rowspan="4">공공부조</td><td rowspan="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15.7)에 따라 기존 지자체 사업과의 상호 보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추진 권고</td><td>제도의 통일성, 지역 간 형평성</td><td>▪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적합하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 하는 추가급여 지급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으로 정비</td></tr>
<tr><td>유사·중복, 누락, 편중</td><td>▪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td></tr>
<tr><td>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td><td>▪ 기존 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강구</td></tr>
<tr><td rowspan="3">지자체별 여건</td><td rowspan="3">▪ 지자체별 재정 상황, 인구 구조 등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간 변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정비</td></tr>
<tr><td rowspan="2">사회 서비스</td><td rowspan="2">▪ 사회서비스 급여 대상자 확대는 가능

▪ 공급기관보다는 수요자 지향 서비스 권고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차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td></tr>
<tr><td>비용/효과</td><td>▪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정비 권고</td></tr>
<tr><td colspan="2"></td><td>기 타</td><td>▪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혜자의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지 제고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점검을 통해 급여/서비스 방식 정비 권고

▪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 검토</td></tr>
</table>

5 시·도별 조치필요 사항

1 추진단 구성 및 정비 계획수립

○ 시·도별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단장 : 부단체장)*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

* 사보위 사무국, 시·도별 추진단,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정비 추진

○ 추진단 책임 하에 지자체에 시달된 정비대상 사업 등을 검토한 뒤 시·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보위 사무국에 제출('15.9.25)

- 각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정비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방향, 대상사업 선정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의 자문그룹에 컨설팅 등 요청

* 정비대상 사업과 정비계획 제출양식은 시도별로 별도 송부예정(보사연)

< 사업군별 정비유형 >

사 업 군	정비유형	비고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폐지 권고	즉시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추진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사업내용 변경, 타사업과 통폐합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⑤ 자체발굴 사업	폐지, 변경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추진

* (예시) 장수수당 지급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로 변경

2 정비추진

○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16년 예산안 반영, 조례개정 등 정비추진

* 단계적 폐지사업은 정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협업 실시(보사연 주관)

- (설명회) 9월초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방향, 정비요령 등 설명예정

- (간담회) 9월말~10월 중순 시·도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의 해소를 위해 컨설팅 등 제공예정

3 정비결과 제출

○ 제출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사보위 사무국에 제출('15.11.27)

- (1차)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15.11.27)

- (2차) 지방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16.1.15)

* 결과제출 양식은 9.27일까지 제출한 추진계획 양식과 동일

4 신규사업 발굴

○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함께,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투자 권장

○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개선한 타 지자체 사례 참고를 위해 보사연에 설치될 사회보장정비협의회 자문그룹과 협의 요망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의 신설·변경 협의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

* 정비계획 제출시 신규사업 리스트도 제출(정비계획 양식과 함께 별도송부 예정)

5 결과점검 및 향후조치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검 실시

* (단장) 국무조정실장, (간사) 기재부, 복지부, 행자부 차관, (구성) 국토부 차관 등 15

개 부처

○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실적을 반영

* (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행자부) 지자체 합동평가

<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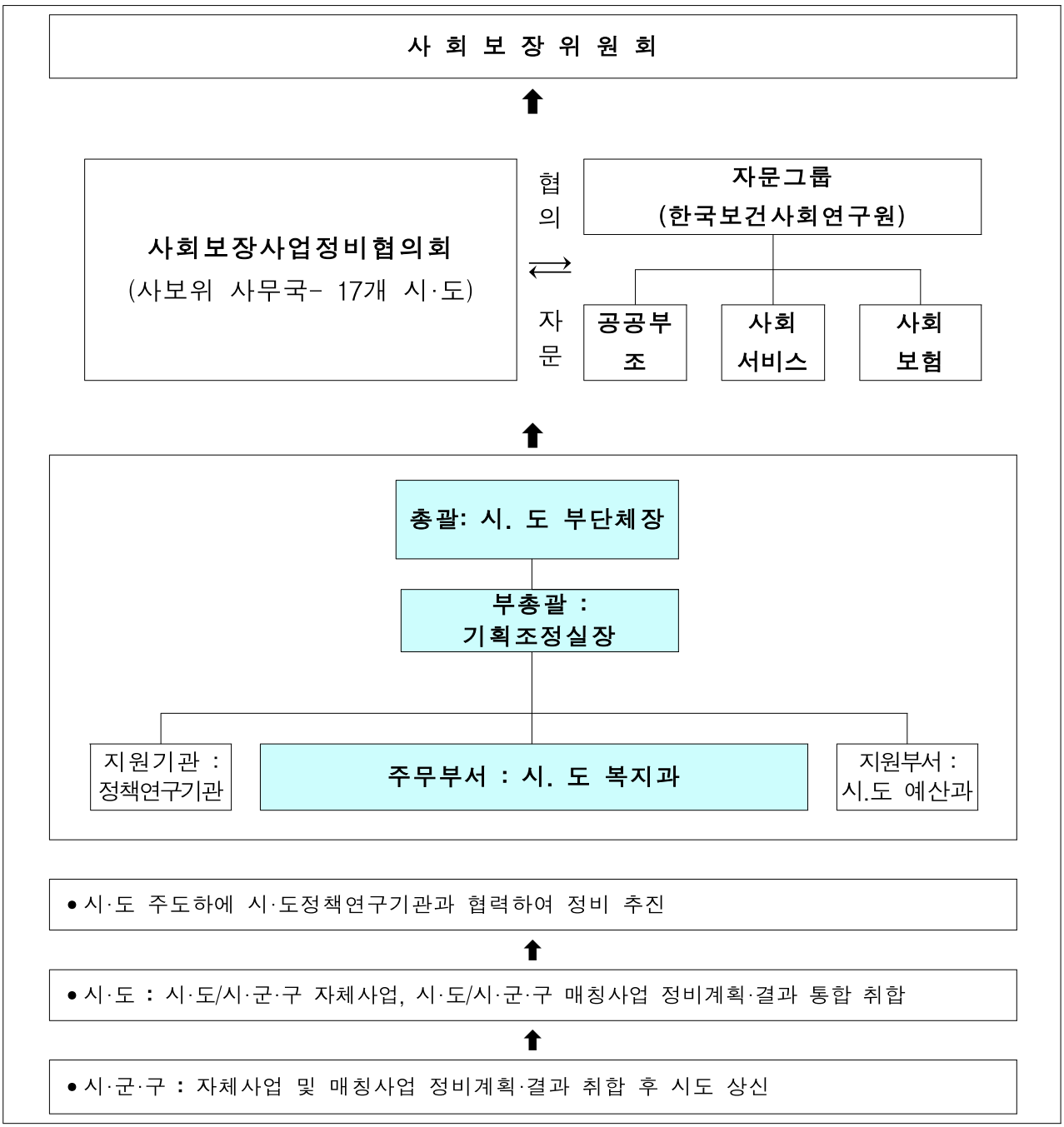

Ⅲ. 추진 일정

추 진 과 제	추 진 일 정
○ 시·도별 정비추진단 구성현황 제출	‘15.8.21(금)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권역별 설명회 개최	‘15.9월초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시·도별 간담회 개최	‘15.9월말~10월초
○ 시·도별 정비계획안 제출	‘15.9.25(금)
○ 시·도별 정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보고	‘15.10월초
○ 정비결과 제출(1차)	‘15.11.27(금)
○ 지자체 정비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5.12월
○ 정비결과 제출(2차)	‘16.1.15(금)

* 정비계획 및 결과 제출 등은 공문으로 송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보사연의 정비 관련 컨설팅은 정비 추진 기간 중 지속 실시

Ⅳ. 행정 사항

1 (제출자료) 시·도 책임 하에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제출자료 >

구 분		제출일자	제출처	제출방식	제출양식
추진단 구성현황		'15.8.21(금)	보건복지부 사보위 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공문제출	붙임2 참조
정비계획 (신규사업 포함)		'15.9.25(금)			별도송부 (시·도 담당자) * 동일양식 활용
정비결과 (신규사업 포함)	1차	'15.11.27(금)			
	2차	'16.1.15(금)			

2 (연락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컨설팅 요청, 간담회 개최 등 문의사항은 보사연에 설치된 사회보장정비협의회 자문그룹으로 연락

○ 시·도에서 시·군·구 문의사항을 취합하여 문의

< 자문그룹 연락처 >

구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보사연	정홍원 연구위원	044-287-8217	sungelim@kihasa.re.kr
	임성은 전문연구원	044-287-8274	
사보위 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서승완 주무관	02-6020-3335	ssw73@korea.kr

[별첨자료 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안

1. 의결주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수요 비중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촉진을 위해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며, 유사한 측정항목을 통합하는 등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 확대(안 제10조의3)

1)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 확대, 지역교육 비중 축소

나.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 확대(안 제12조제1항)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사업 소관부처 조사결과 추가

2)「사회보장기본법」상 사업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의무 위반사항 추가

3)「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관리, 출자출연 관련 규정 위반사항 추가

다.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통합(안 별표1)

1) 보건비와 일반사회복지비를 보건사회복지비로 통합

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항목 정비(안 제8조제1항)

1)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목적세는 제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외의 지방세수입 및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25”를 “35”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0”을 “10”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9의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의 근거 없이 지출하였거나 관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또는 출연 근거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소관 국고보조사업 조사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4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부 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외의 지방세수입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 행정자치부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
1.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복지: 100분의 25	나. ---------- 35
다. 지역교육: 100분의 20	다. ---------- 10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로서 다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9의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의 근거 없이 지출하였거나 관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신 설>	3.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또는 출연 근거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삭 제>
<신 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소관 국고보조사업 조사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신 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4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신 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 미래를여는아이들,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모이세, 천안시공립지역아동센터,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천안신창노인복지센터,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YMCA, 한빛회, 한뼘인권행동,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이상 16개 단체)

[31140]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0(성정동 1033번지 1층) ▪http://www.welfare21.or.kr

▪Tel 041)575-2811~2 ▪Fax 041)575-2858 ▪E-mail 5752811@hanmail.net

2015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